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34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5.

발의자 : 김선교 · 이현승 · 정동만

김성원 · 김상훈 · 김예지

윤상현 · 박덕흠 · 구자근

김대식 · 최보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에서 융자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를 50% 감면하고,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저율과세 특례를 적용하며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농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% 감면하고 있으나, 동 제도들은 2025년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에 대한 50% 감면은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발생시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고,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는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의 자조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.

또한,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 · 재산세 50%

감면은 농산물 유통단계 효율화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저렴한 농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농업인 용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등 2025년 말로 일몰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0조제1항).
- 나.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%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5조제1항).
- 다.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67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67조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<u>2025년 12월 31일</u>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지방세법」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.	----- ----- <u>2029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